의안번호	제 89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29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영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0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발 의 자 : 임영은, 이옥규,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육미선, 김기창

1. 개정이유

○ 인용법령의 명칭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법령의 띄어쓰기 정정(안 제2조, 제4조, 제9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약칭 정의(안 제3조)

– 도 →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하기 위해 → 위해
- 재직중 → 재직 중
- 사고가 있을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각호 → 각 호
- 관하여 필요한 → 필요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나. 관련부서 협의 : 감사관과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제4조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기 위해”를 “위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의원 및 도 소속 공무원”으로, “임기내”를 “임기 내”로,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위원수”를 “재적위원 수”로 한다.

제9조 중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2.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 중에서 선임 2. (생 략) ③ (생 략)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현 행	개 정 안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	②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도 소

현 행	개 정 안
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현 행	개 정 안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